

KISA 제품인증 업무 규칙

2023. 7. 18. 제 정
2023. 12.28. 개 정
2024. 00.00.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아 산업용 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KISA 제품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이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이하 “KOLAS”라 한다)로부터 인정 기준 및 KS Q ISO/IEC 1706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정기구로부터 제품인증 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2. “KISA 제품인증”이란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이하 “제품인증기관”이라 한다)가 산업용 기계·기구 및 설비에 적용되는 해당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인증하는 임의인증을 말한다.
3. “적합성평가”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로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4. “KISA 제품인증 대상”이란 제품인증기관이 한국인정기구(이하 “KOLAS”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의 제품과 제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서면심사”란 KISA 제품인증 대상의 종류별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제품심사”란 KISA 제품인증 대상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제품별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KISA 제품인증 대상 및 인증기준)** ① KISA 제품인증 대상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제89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7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용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인증대상, 인증범위 및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제품인증

제1절 제품인증 신청 등

- 제4조(제품인증의 신청)** ① 제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품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제품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수수료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수수료 전부를 납부해야 한다.

- 제5조(제품인증의 면제)** 제품인증 대상품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제품인증을 면제한다.

- 제6조(신청서의 반려)** ① 규칙 제4조에 따라 제품인증 신청서가 인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수수료는 신청인에게 환불 해야 한다.

- 제7조(심사의 종류 및 시기)** 규칙 제3조에 따른 제품인증 대상별 심사종류 및

시기는 별표3과 같다.

제2절 서면심사 등

제8조(서면심사 제출서류) 규칙 제4조에 따라 제품인증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 2의 서면심사 제출서류를 한글로 작성하여 제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방법 설명서를 제외한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서면심사 방법) ① 제품인증기관은 서면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품인증 대상품의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인증기준 문서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해야 한다.

② 제품인증기관은 서면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품심사 방법) ① 제품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심사 전에 준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품인증 대상품 및 주변의 유해·위험한 환경의 제거 등 관계자 접근 방지에 대한 시설

2. 작업대 및 작업발판

② 제품인증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품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인증기준 일부 심사항목에 대한 제품심사 실시시기 또는 심사장소를 달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제품인증기관은 제품인증 대상에 대해 제품인증 신청자가 스스로 시험을 실시한 후 제출한 용접부의 비파괴시험, 하중시험, 전기안전성 시험 및 전자파 시험 등의 결과가 제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품인증기관은 제품인증업무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이전설치제품의 심사방법) 제품인증기관은 제품인증 대상에 대해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가 제품인증기관에 제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심사를 면제하고 개별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결과 처리

제12조(서면심사 등의 심사결과 보완 등) ① 제품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결과 제품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품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품인증기관은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KISA 제품인증 심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보완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제품인증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부적합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서 교부) 제품인증기관은 규칙 제12조에 따라 심사의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3의1호 서식의 적합성 제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산업용 로봇 시스템에 대한 인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3의2호 서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심사결과통지서 교부의 생략) 신청인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서면심사·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그 결과가 제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품인증기관은 각각의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적합성 제품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제품인증서의 재교부 등) ① 제품인증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품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1.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명칭 또는 신청인 명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경우
3. 제조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품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제품인증 표시 등

제16조(제품인증의 표시) ① 제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 인증기준 문서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장, 사업장 또는 작업공정 표시판에 게시 홍보할 수 있다.

1. 기준문서
2. 제품의 모델
3. 인증번호
4. 제조일
5. 의뢰자의 사업장 주소, 업체명
6. 제품인증기관명
7. 인증마크
8. KOLAS마크 (필수 아님, 단독 표시 불가)
9. 기준문서에서 제품의 품목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 인증마크를 표시할 경우에는 제품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서의 모든 부분을 오해의 여지가 없이 사용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혼동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품인증 표시는 인증협약에 따라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인쇄, 인장 및 각인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인증마크의 작도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7조(인증서 표시 사항) 규칙 제13조에 따라 제품인증기관이 교부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인증 대상 품목
2. 공정명(해당 시)

3.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4. 정격하중 또는 가반하중
5. 적용표준(인증기준)
6. 인증번호 및 인증스킴
7. 제조자명 및 제조자 주소
8. 설치사업장 명 및 주소(해당시)
9. 인증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제품인증의 취소) 제품인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의뢰자가 규칙 제19조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현장조사 결과 KISA 제품인증 업무 규칙 및 인증 적용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때
5.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6. KISA 제품인증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의뢰자가 인증기관에 대한 채무 결제(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를 이행할 수 없을 때
8. 의뢰자가 인증기관과 체결한 인증협약을 위반한 때

제19조(변경절차) ① 규칙 제13조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조자가 인증범위 사항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제품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제품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조자는 제품인증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하여 개선 또는 보완요청을 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인증협약) ① 제품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인증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9조의 변경 이행을 포함하여 항상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KISA 제품인증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인증기관 및 인증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각각 보관해야 한다.

제4장 심의위원회

제21조(심의위원회 구성) KISA제품인증스킴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

1. 인증스킴에 관한 제·개정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2. 제품인증 프로세스의 공정성 등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이해관계 분석 등)
3. 이의 및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품인증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위원 위촉) ① 규칙 제21조에 의한 위원회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제품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해당분야에서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 예정인 위원은 승낙서를 제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품인증기관의 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기구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품인증기관의 장이 되고, 제품인증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품질책임자가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제품인증기관 인력 등

제24조(핵심인력 등) ① 제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핵심인력으로 확보하여 운영해야 한다.

1. 품질책임자 : 경영시스템의 실행, 유지 및 개선 등
2. 인증책임자 : 제품인증에 대한 기술적 책임을 지는 인원
3. 인증심사원 : 제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② 제품인증기관은 품질책임자 또는 인증책임자로 선정된 자를 KOLAS 인정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③ 품질책임자, 인증책임자 및 실무자는 KOLAS에서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5조(역량기준) ① 제품인증기관은 인증책임자 및 실무자에 대해 다음의 역량기준을 포함하여,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활동에 적합한 적격성 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기술책임자의 역량기준

가. 관련 법규 및 KISA 제품인증스킴, KOLAS 공인기관 및 인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나. 방법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실무자의 실무교육 능력,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 실무자의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의 기술능력

가. 인증기관의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 능력

나. 인증방법과 절차 및 품질시스템 이해 및 관리 능력

다. 인증스킴 및 인증제품의 형식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능력

라.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평가 능력

마. 인증심사, 인증서 작성 및 인증결과 해석에 대한 능력

제6장 정보공개 등

제26조(제품인증 현황 게시) ① 제품인증기관은 의뢰자의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제품인증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의 기간은 본 인증협약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제품인증번호

2. 제품인증일

3. 사업장명

4. 제품인증 대상품

5.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② 제품인증기관은 의뢰자의 제품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나 인증협약이 종료되면 다음 사항에 대해 인증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협약이 종료된 인증번호

2.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협약이 종료된 인증서 교부일

3.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협약이 종료된 사업장명

4.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협약이 종료된 소재지

5.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협약이 종료된 인증 대상품명

6.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협약이 종료된 인증서 형식번호

7.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협약이 종료된 기기번호

8. 취소 또는 인증협약이 종료된 이유

제27조(규칙의 사전예고 및 공개) 제품인증기관장은 규칙을 제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사전예고문을 작성하여 제개정 안과 함께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수렴하여야 하며, 그 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경영시스템 검토) ① 제품인증기관의 장은 관련 법규 및 국제기준의 요건에 일치되고, 규정에 따라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년 1회 이상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인증시스템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 이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경영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결과 제기된 개선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히 합의된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서류의 보존) 제품인증기관은 적합성평가 활동으로 생성된 모든 문서는 4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제품인증 수수료) ① 제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 서면심사비용 = 심사수당 × 심사일수(인·일)
2. 현장 제품심사비용 = 심사수당 × 심사일수(인·일) × 출장여비
3. 제품인증의 변경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심사 종류별 비용
4. 적합성 제품인증서 발급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종류별 세부 심사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제31조(이의신청 및 불만처리) ①신청인은 제품인증업무와 관련한 불만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7호 서식의 KISA 제품인증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전송, 전자우편, 홈페이지, 팩스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제품인증기관은 제품인증 심사결과에 대해서 신청인의 이의신청이나 불만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간) 제품인증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2024년 0월 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3. 7 . 1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 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0 . 0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KISA 제품인증 대상 및 인증기준

제품인증대상 (제품명)	제품인증 적용범위 (제품의 범주)	인증기준 (기준문서)	인증스킴 ¹⁾ 유형
산업용 로봇 시스템	산업용 로봇 시스템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이 적합한 제품류 ²⁾	- KS B ISO 10218-2:2011 - ISO 10218-2:2011	스킴유형 1a
고소작업대	수동 또는 동력으로 작동되어 작업대에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	- KS B ISO 16368:2010 - ISO 16368:2010 - [별표7]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41호:2020.01.15.]	스킴유형 1a

1) “인증스킴”이란 동일하게 규정된 요구사항, 특정 규칙 및 절차를 적용하는 특정 제품과 관련된 인증시스템을 말함

2) “산업용 로봇 시스템”이란 다음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말함

가. 산업용 로봇

나. 말단장치

다.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계, 장비, 장치, 부가 축 또는 센서를 포함하는 시스템

라. 산업용 로봇 셀 : 관련된 기계류 및 장비를 포함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로봇 시스템과 그 보호영역

마. 협동 로봇 시스템 : 정의된 협동 영역³⁾ 내에서 인간과 직접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로봇 시스템

3) “협동 영역”이란 보호영역(safeguarded space) 내부의 작업 영역으로, 생산 운전 중 로봇과 인간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곳을 말함

[별표 2] KISA 제품인증 대상별 구비서류

가. 서면심사

대상품	구비서류
고소작업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품 사양서 4. 사용방법 설명서 5. 기계장치 전체 조립도 6. 주요구조부 부분 조립도 및 명세서 7. 방호장치 설치도 및 상세도 8. 전기장치 외관도 및 전기회로도 9. 유압 및 공압장치 외관도 및 회로도 10. 기계장치에 포함된 부품·재료 등의 강도계산서와 관련된 도면 11. 기타 인증기관이 필요 요청 자료
산업용 로봇 시스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산업용 로봇 요구사항(ISO 10218-1)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5. 로봇 시스템(셀) 영역별 구획도(작업영역, 제한영역, 보호영역, 감시구역 등) 6. 로봇 시스템(셀)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자료 7. 기계.기구 및 설비 관련 도면(외형도, 말단장치, 방호울타리 등) 8. 전기 관련 도면(전기단선도, 동력계통도, 접지계통도, 제어반구성 및 부품배치도 등) 9. 제어 관련 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제어시스템 회로도(비상정지, 보호정지, 모드전환(자동/수동) 등) - 안전 제어시스템 블록 구성도(이중화회로) - 안전 제어시스템 구성품 목록표(PL 성능등급) 10. 유·공압 관련도면(해당 시) 11. 로봇 시스템(셀)의 사용설명서 12. 강도계산 및 안전거리계산 자료(해당 시) 13. 기타 첨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시험 성적서(접지연속성시험, 절연저항시험) - KCs 방호장치 인증서(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해당 시)

나. 제품심사

대상품	구비서류
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서류(서면)심사 통지서(인증기관이 보유한 경우 제외) 4. 서류(서면)심사 승인된 기계장치 및 전기장치 도면 5. 재료 또는 부품 등 시험성적서(해당 시)

[별표 3] KISA 제품인증 심사종류 및 시기

구 분	심사종류		제품심사 시기
	서면심사	제품심사	
1. 산업용 로봇 시스템	심사대상	심사대상	- 최초설치 또는 이전설치를 완료한 때
2. 고소작업대	심사대상	심사대상	- 설치형은 최초설치를 완료한 때 - 출고형은 출고 전

[별표 4] KISA 제품인증 마크

1. 도안모형



2. 표시방법

- 가. 표시의 크기는 인증대상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나.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 주위에 한글·영문 등의 글자로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 다. 표시는 인증대상품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 라. 전용색상은 Green(Pantone 362)으로 하고, 보조색은 지정된 Light Green(Pantone 376)을 사용 한다.
- 마.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 5] KISA 제품인증 수수료

구 분	비 용
1. 서면심사	서면심사비용 = 심사수당 × 심사일수(인·일)
2. 현장 제품심사	제품심사비용 = 심사수당 × 심사일수(인·일) + 출장여비
3. 제품인증의 변경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심사 종류별 비용
4. 적합성 제품인증서 발급	가. 최초 발급 시 : 건당 50,000원 나. 재발급 시: 건당 100,000원
<p>비 고</p> <p>가. 심사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고급기술자 등급의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p> <p>나. 심사일수</p> <p>1) 서면심사에 소요되는 최소심사일수(인·일)는 1인·3일을 원칙으로 하며, 기계기구 및 설비의 규모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p> <p>2) 현장 제품심사에 소요되는 최소심사일수(인·일)는 2인·1일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대상의 범위 및 지역을 고려하여 심사일수(인·일)를 조정할 수 있다.</p> <p>다.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다.</p> <p>라. 인증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별(안전거리, 정지시간, 전기안전성 시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p>	